카카오뱅크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카카오뱅크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관계 법령"이라 합니다)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정기예금(DB)"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가입한 이 예금을 말한다.
2. "퇴직연금 정기예금(DC/IRP)"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가입한 이 예금을 말한다.
3. "퇴직연금 정기예금(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정기예금(DC/IRP)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가입한 이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 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6 조 거래방법

이 예금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전문으로만 거래합니다.

제 7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년, 2 년, 3 년으로 합니다. 단, 퇴직연금 정기예금(디폴트옵션)은 계약기간을 3 년으로 합니다.

제 8 조 금리적용

이 예금은 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시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9 조 만기 시 처리방법

① 퇴직연금 정기예금(DB)은 가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금리를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 재예치 시 원금은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퇴직연금 정기예금(DC/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의 3 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③ 퇴직연금 정기예금(디폴트옵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해 집합투자증권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금리를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 재예치 시 원금은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 1 호 외의 경우에는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제 10 조 중도해지금리

만기일 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일(또는 재예치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설명서의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1 조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

이 예금의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은 가입일(또는 재예치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최대 2 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 후 최소 유지금액은 1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 10 조에 따른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2 조 특별중도해지 및 적용금리

①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관계 법령에 명시된 각 사유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및 그 금액에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2 조, 제 24 조 제 5 항 및 그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2.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가입자가 기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제도전환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임
 라. 가입자의 사망
 마.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나.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 조의 4 또는 제 13 조의 6 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 제 3 호, 제 6 호,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특별중도해지는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 시 제 11 조의 긴급출금(일부중도해지)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금리는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특별중도해지금리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기간이 1 년인 경우 :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계약한 약정금리
 나. 계약기간이 2 년인 경우 :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1 년제 약정금리
 다. 계약기간이 3 년인 경우 :
 1) 예치기간이 2 년 미만 경과 시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1 년제 약정금리
 2) 예치기간이 2 년 이상 경과 시 신규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 년제 약정금리
2. 제 1 항제 6 호부터 제 7 호까지는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계약한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제 13 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압류, 상계,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부 칙 (2025. 12. 01.)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